

의안번호	2209759
의 퇴 인	박지혜 의원
회 답 일	2025. 5. 7.
추계번호	25A20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지역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28조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28조의 6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함(제1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의무규정
4	안 제28조의7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실시계획의 개요 2. 현황 및 여건(재생에너지 자원, 지역경제, 환경 등) 3. 기본구상 4. 총괄 사업계획 5. 세부 사업계획(사업 설계, 공사, 운영, 해체, 설비개선 등) 6. 사업단계별 생물다양성 영향 회피 및 상쇄 방안 7. 지역경제 기여 방안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의무규정
5	제28조의15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의2 (지역계획의 수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8조의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3	안 제28조의 6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	
4	안 제28조의7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제28조의15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시점에서 지원대상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관련 계획을 시행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¹⁾ 현시점에서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 참고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안 제28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 발전지구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 관련 사업이나 계획은 없음
 - 이와 유사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²⁾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을 수행중으로, 해당 사업현황은 [참고자료]에 제시
 - 안 제28조의6 및 제28조의7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수립 등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추정하기가 어려움
 - 안 제28조의15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사업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업무 내용 및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현재 관련 유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개시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nabo.go.kr

[참고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요

1. 개념

-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확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태양광·풍력 등, 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³⁾

2.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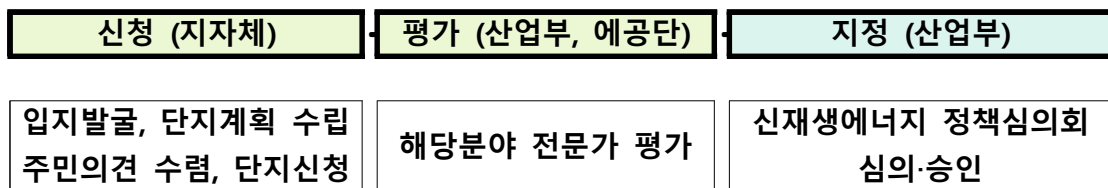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2)

3. 추진 내용

- (지자체 이행)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해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확보, 사업자 공모, 인허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
 - －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강화
- (정부지원) 지자체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
 - *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

4. 운영절차

-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수립·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평가위원단) 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지정



3) 경북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21), 전남 신안 그린솔라('22),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24),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25),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25)